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 삭제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보고에 대한 조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를 “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u>어업재해보험심의회</u>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위원의 해촉)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에 따른 <u>어업재해보험심의회</u> (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u><삭 제></u>

가.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회

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분과위원회

② 법 제3조제6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
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농업
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
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1. ~ 3. (생략)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
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
의사항 중 양식수산물재해보
험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
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어업
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7.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에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0 - 5468